

고흥군의회 공고 제2024-22호

「고흥군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「지방자치법」 제77조와 「고흥군의회 회의 규칙」 제23조의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.

2024년 8월 20일

고 흥 군 의 회 의



고흥군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1. 제안이유

- 위원회 사무를 지원하기 위해 두고 있는 간사를 해당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팀의 팀장으로 현행화
- 위촉직 위원들의 임기 만료일을 당연직 위원들의 임기 만료일과 같게 함으로써 원활한 의정자문위원회 운영 도모

2. 주요내용

- 간사는 해당 업무팀장이 되며,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.
(안 제3조제3항)
- 위원 임기는 위촉된 날로부터 고흥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5조에 따른 위원의 임기 만료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.(안 제4조)

3. 일부개정조례안 : 붙임

4. 조례안 예고기간 : 2024. 8. 21. ~ 2024. 8. 27.(7일간)

5. 의견제출

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기관·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8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흥군의회 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의견 제출사항

- 1) 조례안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·반 여부와 그 사유)
- 2) 의견 제출자의 성명(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), 주소, 전화번호
- 3) 기타 참고사항 등

나. 의견 제출방법 : 서면, 전화, 팩스, 직접방문 등 어느 방법도 가능

다. 의견 제출받는 곳

- 1) 우편 : (59542)/ 전남 고흥군 고흥읍 고흥군청로 1,
 고흥군의회의회장 (참조 : 의회사무과장)
- 2) 전화 : 061-830-5032, 팩스 : 061-830-5595

붙임 1. 고흥군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.

2. 조례안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제출서식 1부. 끝.

[붙임 1]

고흥군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고흥군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3항 중 “의정팀장”을 “해당 업무 팀장”으로 한다.

제4조 중 “2년으로 하며,”를 “위촉된 날로부터 고흥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5조에 따른 위원의 임기 만료일로 하며”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위원의 임기에 관한 적용례) 제4조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위촉하는 의정자문위원 경우부터 적용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3조(구성 등) ①·② (생략)</p> <p>③ 위원회 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, 간사는 <u>의정팀장</u>이 되며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.</p> <p>1. ~ 3. (생략)</p>	<p>제3조(구성 등) ①·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 ----- ----- <u>해당 업무 팀장</u> ----- -----.</p> <p>1. ~ 3. (현행과 같음)</p>
<p>제4조(임기) 위원 임기는 <u>2년</u>으로 하며,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.</p>	<p>제4조(임기) ----- <u>위촉된 날</u>로부터 <u>고흥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5조에 따른 위원의 임기 만료일로</u> 하며 ----- -----.</p>

[붙임 2]

조례안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

자치법규명 : 고흥군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
일부개정조례안

○ 성명(단체명) : (서명 또는 날인)

○ 주 소 :

○ 전 화 번 호 :

자치법규안 내용	찬 성 여 부		의 건	비 고
	찬성	반대		